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계적인 중동·아프리카지역 안보 현안 대응과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방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중동아프리카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25일까지에서 2027년 7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중·장기 정책 수립·시행 등 첨단전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첨단전력기획관과 국방연구개발,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력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방연구개발총괄과와 유무인복합체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25일까지에서 2027년 7월 25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4. 중동아프리카정책과(존속기한: 2025년 7월 25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동아프리카정책과(존속기한: 2027년 7월 25일)

별표 6 5. 국방연구개발총괄과(존속기한: 2025년 7월 25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방연구개발총괄과(존속기한: 2027년 7월 25일)

별표 6 6. 유무인복합체계과(존속기한: 2025년 7월 25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무인복합체계과(존속기한: 2027년 7월 25일)

국방부령 제9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방부령 제9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국방부령 제9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u>2025년</u>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 ----- ----- <u>2027년</u> 1 2월 31일-----.

신 · 구 정원 대비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군인제외) 정원표(제20조제6항, 제20조의2제7항,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6제2항 및 제20조의7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4	.	.	.	.	
	.	.	.	.	
	.	.	.	.	
	.	.	총계	총계	
중동아프리카정책과(존속기한: <u>2027년 7월 25일</u>)					
5	.	.	.	.	
	.	.	.	.	
	.	.	.	.	
	.	.	총계	총계	
국방연구개발총괄과(존속기한: <u>2027년 7월 25일</u>)					
6. 유무인복합체계과(존속기한: <u>2027년 7월 25일</u>)	.	.	.	.	
	.	.	.	.	
	.	.	총계	총계	
	.	.	.	.	